

論 義

## 稅制改革의 内 容 と 問 題 點

韓國經濟人協會

調査一課長 表 翰 慶

### (一)

一年餘의 長期間을 두고 政府가 推進해 오던 稅制改革案은 이제 最終調整에 매듭을 지었다.

現行 19個税法中 13個税法을 改正하고 電話税法과 不動產投機抑制를 為한 臨時措置法의 新設을 内容으로 하는 稅制改革案이 政府与黨의 最終調整作業을 거쳐 国会에 提附된 것이다.

勿論 그동안 税法改正은 每年 豈算編成과 함께 部分的으로 改正되어 왔다. 그러나 今般의 稅制改革은 그 幅에 있어서나 内容에 있어서 前例없이 範囲가 크고 革新的이라는 点에서 一般의 많은 開心을 集中케 하였다.

事實 우리나라 經濟는 第1次 5個年計劃의 完遂에 따라 經濟的基盤과 構造에 많은 變革을 가져왔고 特히 「가트」(GATT)의 加入, 「네거티브·리스트·시스템」의 採択等 開放經濟体制의 指向과 더불어 이에 對應한 長期的 發展態勢를 갖추기 為해서도 稅制改善의 必要性이 首肯되어 왔던 것이다. 即 開放經濟体制의 指向에 따른 國際競爭力의 強化와 合理的 内資勵貢에 適應될 수 있는 稅制로 転換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当初 政府에서 税收의 増大, 經濟開發計劃의 支援, 課稅의 公平, 稅務行政의 合理化等을 基本方向으로 하는 全面的인 稅制改革案을

發表했을 때 經濟界를 비롯한 各界에서는 同案이 單純히 近視眼의  
인 增稅를 目的으로 했을뿐 아니라, 負擔加重으로 經濟의 健全한  
成長과 安定을 害칠 것이며, 그 内容에 있어서도 不公平하고 非現  
實의 矛盾点이 많다는 点을 들어 強力히 反對를 해왔다. 따라서  
月餘에 걸친 論難과 修正作業 끝에 成案된 이번 稅制改革案은  
甲種勤勞所得稅, 丙種配當利子所得稅, 物品稅, 不動產譲渡稅等에서는 当  
初 政府案에 比해 어느 程度 改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여기에서 看做할 수 있는 것은 稅収増大라는 主力点에는  
何等의 再考가 없을뿐 아니라 餘他 不合理한 点도 完全히 除去되  
지 않았다는 点이다。

## (二)

高度의 經濟成長과 財政의 自立을 뒷받침하기 为해서 国民負担의  
増大는 不可避하다고 하겠으나 民間部門의 伸張을 危脅하는 稅収의  
増大는 避해야 할 것이다.

税制改革과 国民負担을 比較해 볼 때 稅収増大倾向이 1964年에  
291億원, 1965年 417億원, 1966年 704億원, 1967年 887億원  
으로서 年 3.5%의 平均增加率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稅収의 增大가 急增하게 되는 것은 그만큼 国民所得  
의 增大도 8倍로 增大되었다는 것을 譼明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間의 所得増大는 1964年이 94.3 달라, 1965年이 100.5 달  
라, 1966年이 114.3 달라, 1967年이 139 달라로 되었다. 이렇게  
볼 때 이러한 稅収増大야말로 増稅一方인 国庫目的에 不過하다고  
보겠다.

특히 新年度 租稅收入은 今年度보다 49%나 激增되었으며, 專壳  
益金, 公共料金引上을 합치면 무려 830億원으로 推定되어 1968年

度 国民總生産分의 折半が량을 政府部門에서 吸收하는 셈이 된다。

다시 말해서 새해에 늘어날 富의 나머지 折半만을 가지고 国民個人이나 民間企業이 活動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財政의 過度한 肥大는 아무래도 民間經濟活動의 相對的인 縮小를 가지고 온다는 것은 当然한 埋致일 것으로 보아진다。

따라서 이와같은 政府의 強制貯蓄을 通한 投資量이 가장 効果的이라는 思考를 是正하고 民間企業의 自發的 投資의 極大化로서 이를 達成토록 하는 一大方向 転換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要컨대 正常의이고 持続性있는 經濟發展의 要諦는 無理없는 内資의 動員에 달려있다고 볼 때 内資動員의 主軸이라고 할 公開法人의 促進, 나아가 資本市場의 育成에 보다 力点이 두어져야 할 当為性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法人税法改正案을 보면 公開法人 育成策으로서 公開法人에 對해서는 現行税率의 適用, 稅務查察의 免除, 捐金範圍의 拡大等을 反映시키고 있는 反面 非公開法人에 對해서는 税率을 45%로 올려 相對的으로 公開法人화를 促進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現在 国營企業体를 除外하고 純民營企業体로서 公開法人이 5個社에 不過하다는 實情을勘案할 때 이러한 微微한 特典만으로 果然 얼마만한 誘導의 効果가 이루어질 것인가를 疑問치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此際에 公開法人으로의 促進이 繫要한 國策이라고 생각한다면 좀 더 果敢한 政策的 誘導가 試圖되어야 할 것이다. 即 現行 株式上場基準規定의 緩和는 勿論 公開法人의 条件과 定義를 拡大하여 準公開法人을 設定하고 이에 따라 우선 税率을 10% ~ 20%程度로 낮추고 보다 果敢한 特典을 賦与하는 것이 賢策일것 같다. 이는 現在 우리나라 企業의 大部分이 非公開法人으로 急激한 公開法人으로의 転換은 事實上 困難하므로 非公開法人에 對한

지나친 差等稅率은 차치하면 法人稅率의 引上과 같은 結果를 招來할 憂慮가 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公開法人에 이르는 中間段階로서 準公開法人을 設定하여 政策을 다루는데 있어서 하나의 緩衝的 過渡的 段階를 마련하는 것도 새로운 方案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勿論 公開法人化가 稅法만 가지고 이루어질 수는 없으며 적어도 金融面, 資本市場의 正常化等 三位一体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段階를 거쳐으로서만이 正常화의 길을 摸索할 수 있을 것이며 稅制가 政策的 앞날을 바라보는 見地에서 取할만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 (三)

「네거티브·씨스템」実施以後 產業界에 대한 貿易自由化的 거센 물결은 企業体质改善와 對外競爭力 培養을 어느때보다도 深刻한 問題로 登場케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企業이 아직도 技術의 落後, 金融上의 隘路, 經營의 未熟等 그 体质이 脆弱한 諸點을勘案할 때 對外進出에 暗影을 먼저 주고 있음을 看過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諸難点을 稅制面에서 支援할 수 있는 政策的 配慮가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固定資產의 耐用年數를 短縮하고 加速償却制를 採択함과 同時に 投資控除制의 適用範圍와 控除率을 보다 實効性 있는 線으로 引上토록 해야 하겠다.

開放經濟体制의 指向에 따라 國際競爭力의 強化, 技術發展에 따른 施設의 適期代替, 產業의 近代化, 生產의 効率化는 우리 民間企業이 当面한 急先務임은 말할 必要도 없다. 따라서 企業으로 하여금 拡大再生產에 必要한 資金을 自體調達케 하고 投下資本의 早期回収

를 為해서도 加速償却制를 採択하고 投資控除制度의 보다 効率的인 運營을 期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寄附, 接待費의 限度額을 現實에 溝合도록 再調整 引下해야 하겠다. 經濟의 發展과 企業規模의 拡大, 特히 海外市場의 開拓에 따라 寄附接待費는 相對적으로 急增되고 있는 것이 事實이다.

그러므로 寄附接待費의 지나친 範囲縮小는 企業會計과 稅務會計의 調整을 더욱 困難케 하고 企業의 資本蚕食과 社会公益事業을 崩縮시키는 逆效果를 招來할 것이다. 따라서 正當한 資金支出을 明文化하고 範囲를 拡大도록 해야할 것이다.

세째로 社內留保에 對한 看做配當과 綜合所得稅의 算入은 適宜調整되어야 할 것이며 私債利子稅率의 引上은 慎重을 期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法人의 社內留保金은 企業貯蓄이 되어 企業의 健全化에 도움이 되고 拡大生産을 為한 投資資金의 大宗을 이루고 있다. 特히 大衆의 資本投資 參与를 期待하기 어려운 韓國에서 그 重要性이 한層 더하다. 그런데 이에 對한 課稅는 企業配當을 強要하여法人貯蓄의 減少와 法人投資를 抑制시킬 憂慮가 짙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弊端을 最大限 缩小할 수 있도록 다음 事項을 明文規定해야 할 것이다. 即 法人稅法上 損金支出이 許容되지 않는 租稅公課와 企業 및 稅務會計 計算에 있어서 所得計算期間의 差異로 因한것은 留保所得計算에서 控除토록 할 것이며, 同一課稅期間에 있어서 同一人이 投資한 法人에서 欠損金이 發生했을 時遇는 相計計算토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私債利子에 對한 高率課稅는 偽裝私債의 防止에 있다고 하

나 쥐를 잡으려다 독을 깨는 일이 되지 않을까 겁이난다。私債를  
가장 많이 活用하고 있는 絶對多數의 中小企業에 있어서는 偽裝私  
債가 極히 드물며, 私債利子稅의 引上은 企業의 効率的인 運転資金  
의 調整難을 加重케 하므로서 企業活動의 萎縮으로 波及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銀行貸付가 国内企業에 効率적으로 供給될 수 있는 現實  
의 与件을 생각할 때 当分間 私債市場을 適視하거나 萎縮시키는 일  
은 賢明한 施策이 못된다고 생각한다。

#### (四)

第二次五個年計劃의 所要資源과 財政需要의 膨脹을 充足히 為한  
合理的 内資調達은 不可避하다。그러나 資本蓄積이 不足한 우리나라  
라 境遇에 있어서는 不得已 間接稅에 置重할 수밖에 없다는데  
問題의 焦点이 있다。

이번 稅制改革에 있어 118億원의 增稅目標中 消費稅系統의 새  
로운 稅金負担은 物品稅 80億원, 酒稅引上 80億원, 石油類稅率引  
上 20億원, 電話稅 新設 8億원으로 無慮 88億원에 達하고 있  
으며 政府는 이와같은 間接稅 置重理由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  
다。即 「直接稅는 投資된 部分에서 支払되며, 間接稅는 消費된  
部分에서 支払되기 때문에 長期的으로 볼 때 直接稅는 投資를  
抑制시키고 間接稅는 消費抑制를 通하여 賯蓄을 奬励하고 投資를  
증大시키므로 生產과 供給을 증大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間接稅  
는 消費水準의 高低를 考慮하여 稅率構造를 調整하면 庶民大衆의

負担에는 影響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勿論 現 經濟實情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間接稅의 置重은 不可避하다고 본다. 그러나 間接稅 置重으로 因한 物價의 上昇, 大衆負担의 提高, 生產의 委縮을 考慮하지 않으므로서 產業 및 貿易政策과의 平離現象을 惹起하여 國民經濟의 發展을 滞害하지 않을까 憂慮되는 바 적지 않다.

特히 物品稅에 있어서는 課稅對象品目을 現在의 46個品目에서 79個品目으로 拡大하고 稅率도 平均 30%나 引上한다고 한다.

理論的인 面에서는 物品稅가 消費稅이기 때문에 生產者나 商人에게 負担이 없으나 實際面에 있어서는 反對의 結果를 招來하는 境遇가 許多하다。即 現行法上 物品稅의 納稅義務가 大體로 製造業者이기 때문에 이들은 物品稅의 代納으로 因한 資金事情에 逢着하게 되며 最近에 와서 商慣例가 되고 있는 信用의 長期化로 말미 아마 加一層 隘路를 노끼고 있는 것이 企業界의 實情이다。

反對로 同稅率의 引上이 消費者에게 転嫁될 때는 價格의 引上은 物論이거니와 特히 「인프레」가 進行되고 있는 現實에 있어서는 一般物價의 上昇效果를 波及시킬 可能성이 짙은 것이다。

또한 課稅對象品目의 拡大는 必需品의 領域을 浸透하므로써 大衆負担이 累增되고 稅額賦課는 所得能力에 對해서 無差別이기 때문에 課稅는 結局 逆進的인 結果로 招來될 것이 分明하다。 따라서 租稅에 期待하는 所得再分配效果는 無力化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間接稅 置重도 스스로의 限界가 있는 것이며 消費稅의 大宗이라고 할 物品稅의 課稅對象品目의 選定과 稅率調整에

있어서는 慎重을 期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甲種勤勞所得稅에 있어서는 現行 免稅點 5,958 원을 7,000 원으로 引上하고 15,000 원以下에 대해서는 稅額控除制를 採択하며 稅率構造도 7段階로 한다고 한다。 免稅點의 引上은 当初 政府案에 比해 볼 때 많은 改善이 이루어졌다고 보나 그 間의 物價上昇率을勘案할 때 아직도 非合理的인 線이라고 보겠다。

따라서 稅額控除制는 免稅point의 不合理性에 비추어 一步前進된 制度라고 하겠으나 所得区分과 稅率構造는 現行水準을 維持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특히 高所得層 重課를 내세우고 있으나 지나친 重課는 오히려 所得의 陰性化를 助長하여 納稅觀念의 向上이란 面에서도 逆効果를招來하지 않을까 憂慮된다。

### (五)

바야흐로 韓國經濟는 体质改善의 転換点에 到達했다고 본다。 成長目標나 量的增大的 達成도 重要하지만 오히려 그 内部的인 質的構造의 調和와 改善向上에 보다 力点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即投資財源의 調達에 있어서도 이제까지 等閑視되었던 大衆의 自發的貯蓄의 增大와 이를 根幹으로 하는 公開法人과 資本市場의 育成, 世界經濟를 向한 國際競爭力의 培養, 負擔의 公平에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稅制改革의 基本方向도 어디까지나 그러한 長期的인 眼目에서 構想되고 誘導되어야 할 것이다。